

특정감사

# 감사결과보고서

-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 11.

감사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경영분석 결과	3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1
1.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문책)	12
2. 일반직 6급 직원 채용 부적정(주의)	30
3. 자산 운용 부적정(통보)	33
4. 퇴직자 모임에 대한 예산지원 부적정(주의)	37
5. 대학생 자녀 등 학자금 지원 부적정(주의·통보)	39
6. 회의비 집행, 성과급 지급 및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주의·통보)	44
7. 국외출장 준비금 지급 부적정(통보)	47
8.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부적정(통보)	49
9. 상임고문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55
10. 가평와인밸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57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관광공사의 2013년 12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각각 122%, 32%로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비율관리 목표수준인 200%를 하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 수익사업 중단 및 민간과의 경쟁체제로의 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경영지표가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개선이 긴요한 실정인데도 위기관에서는 경영혁신 없이 불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유지하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유지하는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 영업이익은 2011년 -369억 원에서 2013년 -436억 원으로 손실 증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2011년 183억 원에서 2013년 -155억 원으로 적자 전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2013년 12월 기재부)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의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경영 원인을 도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영내실화 및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관광공사의 경영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여 국내외 투자사업실태와 조직·인력·후생복지 등 경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관광공사의 경영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악화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신규직원의 부당채용 여부, 경영악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조정 여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및 편법적인 경비지출 등 경영관리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 중복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의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감사의 초점을 두었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에 앞서 2011년 이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및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와 2011년 이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언론보도 사항,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4. 4. 21.부터 같은 해 5. 2.까지 9일간 예비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하여 같은 해 5. 12.부터 6. 27.까지 30일간 13명(감사인원)을 동원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실지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질문·답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4. 11. 20.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경영분석 결과

### 1. 일반 현황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모두 준시장형 공기업<sup>1)</sup>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관광진흥,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광고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각 기관의 주요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요 업무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관광 진흥 사업</li> <li>▪ 관광자원 개발 사업</li> <li>▪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li> <li>▪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광고의 판매대행</li> <li>▪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li> <li>▪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사업</li> </ul>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013년 말 현재 당기순이익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32억 원이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50억 원이며, [표 2]와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예산과 인력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유형

구	분	내	용
공기업	시장형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자료: 감사자료 재구성

각각 4,806억 원, 586명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예산(722억 원)과 인력(286명)보다 많은 편이다.

[표 2]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요 업무

(단위: 억 원, 명)

기관명	당기순이익 (2013년)	예산(2014년)			인원(정원)			조직 (2014년 6월 기준)	기관장
		계	자체사업	기금사업	계	임원	직원		
한국관광공사	32	4,806	3,276	1,530	586	5	581	4본부 15실 48팀, 31해외지사	DF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50	722	647	75	286	6	280	4본부 2실 7국 27팀 4지사 3지소	R

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체육관광부, 총 8,550억 원)의 위탁사업(1,530억 원)을 추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 1조 785억 원)의 위탁사업(75억 원) 추진 중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지배구조의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가(기획재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는 국가(기획재정부) 55.2%,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배구조 현황

(단위: 주, 억 원, %)

기관명	주주명	주식 수	출자금액	지분율
한국관광공사	기획재정부	3,575,764	179	55.20
	한국정책금융공사	2,823,500	141	43.59
	한국철도공사	56,377	3	0.87
	코리아리재보험(주)	11,275	0.5	0.17
	금융감독원	11,275	0.5	0.17
	소계	6,478,191	324	1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재정부	30,000,000	3,000	1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2. 재무상태 및 경영악화 현황

### ◆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나 경영환경 변화로 경영상태는 악화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표 4]와 같이

자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7,911억 원에서 2013년까지 7,986억 원으로 0.9%(75억 원) 증가하였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로 10.5%(901억 원) 감소(2008년 8,561억 원 → 2013년 7,660억 원)하였다.

부채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3,750억 원에서 2013년 1,942억 원으로 48% 감소하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역시 2008년 5,313억 원에서 2013년 4,211억 원으로 20%(1,102억 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90%에서 2013년 32%로 58%p 감소하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역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64%에서 122%로 42%p 감소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목표수준 200% 이내인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

[표 4]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도별 재무변동 현황

(단위: 억 원, %, %p)

기관	구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B)	증감(B-A)
한국관광 공사	자산	7,911	9,592	10,125	7,508	8,502	7,986	75
	부채	3,750	3,901	3,018	2,198	2,298	1,942	-1,808
	금융부채	1,863	1,827	1,645	1,518	1,195	1,195	-668
	비금융부채	1,887	2,074	1,373	680	1,103	747	-1,140
	부채비율	90	68	42	41	37	32	-58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자산	8,561	9,733	9,974	11,719	8,086	7,660	-901
	부채	5,313	6,456	6,549	8,152	4,554	4,211	-1,102
	금융부채	-	-	-	-	-	-	-
	비금융부채	5,313	6,456	6,549	8,152	4,564	4,211	-1,102
	부채비율	164	197	191	229	132	122	-42

주: 2010회계연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후 2011회계 연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한 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20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계획에

따라 기존에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았던 면세점 운영권이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한편, 기 개발된 관광단지 매각 지연,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 등 수익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표 5]와 같이 최근 3년간(2011~2013년)은 영업손실이 증가 추세다.

[표 5] 한국관광공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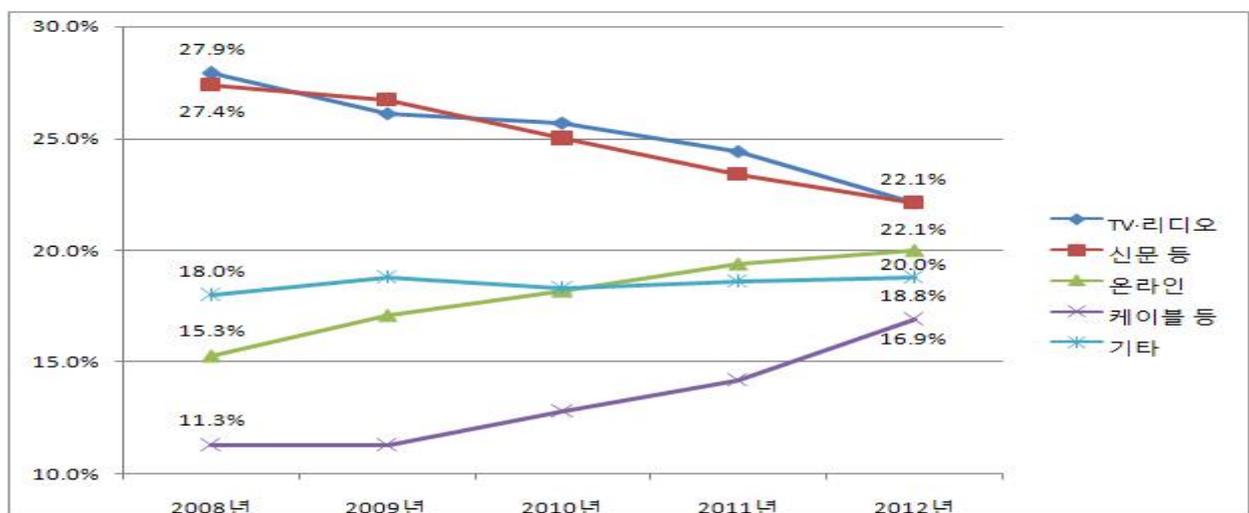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업이익	-313	-530	21	-369	-378	-436
당기순이익	332	1,570	1,775	-118	862	33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전체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방송광고매체(TV·라디오)의 시장 점유율이 [도표 1]과 같이 축소되는 가운데 2012년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동안 위 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이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자와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도표 1] 광고시장 매체별 점유율 변동 추이



주: 기타는 옥외광고, 지하철·버스 광고 등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 광고판매를 대행하던 ▷▷ TV, ☒☒ 경인TV 등 2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권이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자인 주식회사 ♡로 이관됨에 따라 [표 6]과 같이 2012년 이후 매출액이 급감(2011년 3,338억 원 → 2013년 2,038억 원)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표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도별 경영실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광고판매액	21,855	19,064	22,089	23,616	15,178	14,141
매출액	3,161	2,765	3,124	3,338	2,162	2,038
영업이익	62	22	172	183	-193	-155
당기순이익	96	59	174	189	-41	-5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3. 경영관리(조직·인사·복리후생 등) 현황

#### ◆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등을 그대로 유지

한국관광공사는 2008. 10. 22.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안”(이하 “선진화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면세점 운영 등 비핵심사업을 단계적으로 중지함에 따라 공사의 주요 사업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방 관광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표 7]과 같이 해외 및 국내지사를 늘리고 있다.

[표 7] 한국관광공사 인력 등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기관 전체 임직원 수	544	544	544	574	586	586
해외지사	지사 수	27	27	28	31	31
	직원 수	77	77	77	83	83
국내지사	지사 수	5	5	5	5	10
	직원 수	39	39	31	26	27

주: 임직원 수 및 해외지사 직원 수는 정원 기준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중단된 사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및 중문관광단지 골프장 등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유로 면세점 운영직 등을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고 [표 8]과 같이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초과현원이 발생하고 있다.

[표 8]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인력변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원	765	544	544	544	574	586
현원	733	722	609	614	629	642
초과현원	-32	178	65	70	55	56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2012년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 TV광고 판매대행 중지, 광고진흥 업무 추가 등 일부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구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산하고 현재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표 9]와 같이 정원은 18명 감소하였으나 조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변동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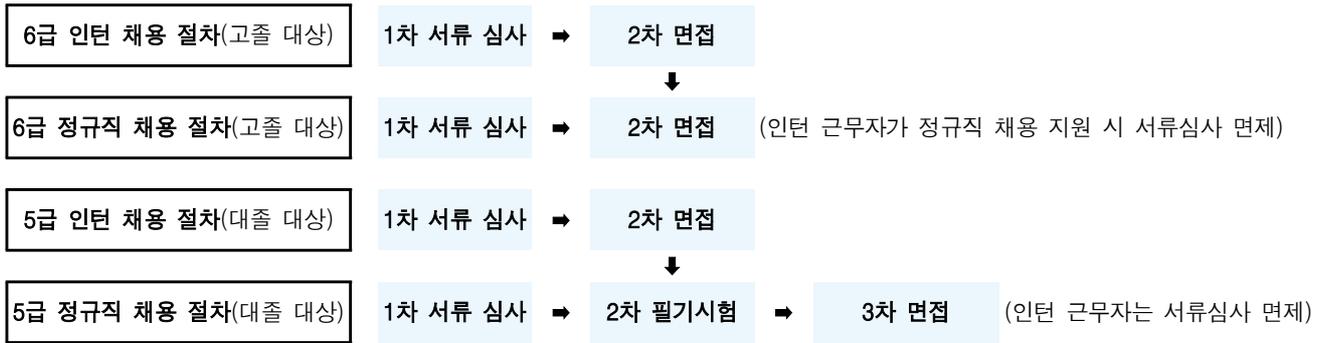
구분	2012년 5월 이전(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12년 5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년 7월 현재
조직	4본부 2실 7국 1센터 26팀 4지사	4본부 2실 7국 27팀 4지사	4본부 2실 7국 27팀 4지사
정원(A)	304	286	286
현원(B)	287	280	281
과부족(A-B)	17	6	5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신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총 31명의 인턴사원과 26명의 정규직 사원

등 총 57명을 채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채용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규직원 채용절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표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규직원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현재
인턴	5급	12	12	-
	6급	4	3	-
	소계	16	15	-
정규직	5급	14	9	-
	6급	2	1	-
	소계	16	10	-
합계		32	25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표 11]과 같이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보수는 6,860만 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의 1인당 평균 보수(6,92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432만 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평균 복리후생비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보수는 8,454만 원으로 최고수준(준시장형 공기업 중 2위)이며, 복리후생비 역시 537만 원으로 16개 준시장형 공기업의 평균 복리후생비 45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높은 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11] 감사대상기관별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및 평균 보수 지출 현황

(단위: 만 원, 위)

구분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한국관광공사	556	609	506	478	43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689	537	551	615	537
	준시장형 공기업 평균	442	448	497	536	450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한국관광공사	5,712	6,393	6,656	6,783	6,86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773	8,302	8,761	8,776	8,454
	준시장형 공기업 평균	6,038	6,394	6,698	6,870	6,923
평균보수 순위 <sup>주)</sup>	한국관광공사	12	10	8	8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1	1	1	2

주: 전체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평균 보수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

# 감 사 원

## 문 책 요 구

제 목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문책 대상자	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팀 차장 A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팀 팀장 B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국장 C
문 책 종 류	② B(정직) ③ C(정직)

###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A은 2008. 11. 1.부터, B과 C는 2012. 5. 23.부터 2014. 8. 7. 현재까지 각각 위 공사 위 직위에서 2012년도 인턴사원과 정규직사원 채용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 1. A의 경우

#### 가.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 부당 채용

위 사람은 2012. 6. 8.경(날짜 모름) 2012년도 인턴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계획(이하 “인턴사원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기안하였다.<sup>1)</sup>

1) 인턴사원 채용계획은 ★팀장, ☆국장, ○이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었음

인턴사원 채용계획과 2012년도 인턴사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고졸 인턴사원의 경우 지원서 접수기간[2012. 6. 12.~6. 19.(8일간)] 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 「시험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는 해당 전형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 채용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지원서 접수기간[2012. 6. 12.~6. 19.(8일간)] 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자 중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선정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상급자로부터 지원서 접수기간 동안 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서 접수기간보다 2일 정도 지난 2012. 6. 21.경(날짜 모름) ★팀장 B으로부터 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원서를 제출하였어도 합격이 어려운<sup>2)</sup> D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으면서 D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

2) 위 공사에서는 인턴사원이나 정규직사원 채용 시 최종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D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은 9과목 중 8과목이 '수~가'등급 중 '가'등급이었고, 인사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도 D의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지원서 접수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이 나빠 사실상 서류전형에 합격하기 곤란

같은 날 D에게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전화로 연락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사람은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9명과 더불어 D를 면접시험대상자에 포함시킨 문서(제목: 2012년 인턴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계획)를 기안하여 ★팀장 B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문서가 ☆국장과 ○이사의 결재를 거쳐 사장의 최종 결재<sup>3)</sup>를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D가 2012. 6. 27.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2. 6. 29.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으로 채용(2명 채용, 경쟁률 17:1)된 후 같은 해 12. 1. 위 공사의 2012년도 6급 정규직사원 채용(1명) 시 인턴사원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를 면제받아 면접시험만으로 정규직사원으로 채용(경쟁률 816:1)되었다.

#### 나. 2012년도 5급 정규직사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위 사람이 2012. 10. 12. 경 2012년도 5급 정규직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안한<sup>4)</sup> 채용계획(이하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5급 정규직사원(일반행정 11명, 정보기술 3명)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후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에 따라 2012. 10. 17. 공고한 정규직사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응시자들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팀장과 ☆국장 중 누가 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는지 모름

4)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은 ★팀장, ☆국장, ○이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었음

[표 1] 5급 정규직사원 채용계획

(단위: 명)

구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채용예정인원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기준	
일반행정	최종학교 성적과 영어성적	채용예정인 원의 70배수	전공점수와 논술점수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면접점수	11
정보기술	신입		논술점수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1
	경력			최종학교 성적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주: 1. 필기시험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는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  
 2. 인턴경력자는 서류전형 면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사람이 정규직사원 채용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당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기재된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각 전형 단계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당초 선발기준을 변경하더라도 각 전형 단계가 진행되기 전 최종의사결정권자(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변경하여야 하며, 각 전형 단계의 선발 결과를 확인한 후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와 다른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탈락하여야 하는 인원이 합격되도록 하면 안 된다.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상급자가 당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와 다르게 정규직사원 채용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했다.

**(1)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 부당 확대**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일반직 5급 정규직사원의 경우 채용인원의

70배수<sup>5)</sup>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2년 10월 말경 서류전형업무를 대행<sup>6)</sup>하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응시자별 서류전형 점수와 순위가 기재된 서류전형 결과를 전자메일로 제출받아<sup>7)</sup> ★팀장 B에게 보고한 후 ★팀장 B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을 채용인원의 70배수에서 90배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에 채용인원의 90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같은 해 10. 30. ●●로부터 위 서류전형합격자 명단을 공식 통보받고, 2012. 10. 31.경 이를 확정하는 문서(제목: 정규직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및 필기시험 실시계획)를 기안하여 ★팀장과 ☆국장 및 ○이사의 결재를 거쳐 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E과 F 등 278명[일반행정: 218명, 정보기술(신입): 20명, 정보기술(경력): 40명]은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에 따른 70배수에 포함되지 않는에도 합격 처리되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그 중 E과 F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2. 12. 1. 5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sup>8)</sup>되었다.

## (2) 필기시험 선발기준 부당 변경 등

### ① 필기시험 선발기준 부당 변경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5급 일반행정분야 응시자에게 전공과목<sup>9)</sup>과

5) 2011년도 정규직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합격자 선발배수(최종 선발인원의 20배수)보다 3배수 이상 많음

6) 계약일: 2012. 10. 23., 계약금액: 17,006,000원, 용역범위: 정규직사원 채용업무 대행(서류전형, 필기시험)

7) ●●로부터 공식문서로 서류전형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서류전형결과를 전자메일로 제출받아 검토하였음

8) 일반직 5급 정규직사원의 최종 채용경쟁률은 506:1

9) 경영학, 방송·언론·광고, 법학 등 3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

논술과목 등 총 2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실시한 후 2개 과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선정하되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사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이 2012년 11월 경 필기시험업무를 대행하는 ●●로부터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점수와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전자메일로 제출받아<sup>10)</sup> 이를 ★팀장 B에게 보고하자 ★팀장 B은 [표 2]와 같이 5급 일반행정분야 응시자 중 경영학이나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서 전공과목 과락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시키고, 1981년 이전 출생자를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2] 필기시험 합격기준 변경내용

구분		전공과목 과락점수		연령제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일반행정	경영학	40점	50점	연령제한 없음	1981년 이전 출생자는 합격자에서 제외
	방송언론·광고				
	법학		좌동		좌동
정보기술	신입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없음			
	경력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위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팀장 B의 지시대로 [표 2]와 같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여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 현황”과 같이 경영학을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 중 당초 기준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할 G 등 17명을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대신 2개 과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G 등에 비해 낮아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야 H

10) ●●로부터 공식문서로 필기시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필기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음

등 13명을 필기시험합격자로 처리하고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초 기준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할 I 등 2명을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대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야 할 N 등 3명을 필기시험합격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팀장 B에게 보고하였다.<sup>11)</sup>

한편 위 사람은 이와 같이 변경된 필기시험 합격기준에 따라 필기시험합격자를 재선정하면서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 중 마지막 합격순위인 28위<sup>12)</sup>에 해당하는 J, K, L 등 동점자 3명을 임의로 불합격시킨 후<sup>13)</sup> 차순위자 중 37위인 M과 공동 48위인 N과 O를 합격자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 중 28위까지만 필기시험합격자로 선발하여야 하므로 차순위자 중 M만 필기시험합격자에 포함시키면 되는데도 28명을 초과하여 N<sup>14)</sup>과 O를 필기시험합격자에 포함시키는 등 총 30명을 필기시험합격자로 선정하였다.<sup>15)</sup>

그 후 2012년 11월경(날짜 모름) 위 사람은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 현황”과 같이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순위를 변경하여 ★팀장 B에게 보고한 후 이와 같이 변경된 필기시험합격자의 이름과 순위를 ●●에 통보하여 같은 해 11. 13. 같은 내용을 ●●로부터 공식 문서(제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필기전형 결과)로 받았다.

## ② 허위 문서 작성 및 보고

11)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와 합격으로 처리된 자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동점자 수의 차이 때문임

12) 변경된 필기시험합격기준에 따르더라도 필기시험합격자 선발순위는 28위까지임

13) 위 사람은 J, K, L 등 3명을 “여자”라는 사유로 합격자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차순위자 중 남자만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사유로 42위인 M과 공동 53위인 N과 O를 필기시험합격자에 포함시켰다고 답변. 그러나 변경된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합격자 중 “여자”라는 사유로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된 인원은 J, K, L 등 3명만 해당

14) N은 필기시험합격자로 선정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5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되었음

15) 위 사람은 착오로 N과 O를 필기시험합격자에 포함시켰다고 답변

그리고 위 사람은 이와 같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여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하였으면서도 2012년 11월 중순경(날짜 모름) 사장에게 필기시험합격자 선정현황을 보고하는 문서(제목: 정규직사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실시계획)를 작성할 때에는 ★팀장 B의 지시에 따라 나이 제한이나 과락점수 상향조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없이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각 과목 4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여 ★팀장과 ☆국장의 결재를 거쳐 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 현황”과 같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할 G 등 19명이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되는 대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야 할 H 등 16명이 합격자로 처리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그중 H<sup>16)</sup>, P<sup>17)</sup>, N<sup>18)</sup>은 최종합격자로, Q<sup>19)</sup>은 예비합격자 1순위로 각각 선정되었고, 그중 N과 Q이 2012. 12. 1. 5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되었다.

#### 다. 감사자료 파기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2014. 6. 11. 2012년도 정규직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필기시험응시자의 점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사람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채용 관련 자료 전체를 제출하도록 위 사람에게 구두로

16) H은 최종 합격한 후 2012. 11. 30. 입사 포기

17) P은 최종 합격한 후 2012. 11. 30. 입사 포기

18) N은 최종 5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됨

19) Q은 예비합격자 1순위로 선정되었다가 H과 P의 입사 포기로 5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됨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4. 6. 11. 감사원으로부터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2012년도 정규직사원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후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하여 임의로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다.

## 2. B의 경우

### 가.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 부당 채용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하급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2. 6. 21.경(날짜 모름) 상급자인 ☆국장이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원서를 제출하였어도 합격하기 어려운 D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D를 면접시험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하급자인 차장 A에게 D를 면접시험대상자에 포함시키고, D로부터 지원서를 제출받도록 그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같은 날 차장 A이 D를 면접시험대상자에 포함시킨 기안 문서(제목: 2012년 인턴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계획)에 결재하여 위 문서가 ☆국장의 결재를 거쳐 사장의 최종 결재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가항”의 내용과 같이 고졸 인턴사원이나 6급 정규직사원 채용 부적격자인 D가 6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되었다.

#### 나. 2012년도 5급 정규직사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정규직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1-나-(1)항”의 내용과 같이 당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기재된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당초 선발기준을 변경하더라도 각 전형 단계가 진행되기 전 최종의사결정권자(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변경하여야 하며, 각 전형 단계의 선발 결과를 확인한 후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와 다른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탈락하여야 하는 인원이 합격되도록 하면 안 된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하급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 부당 확대

위 사람은 서류전형결과를 확인한 후인 2012년 10월 말경(날짜 모름)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국장이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을 채용인원의 70배수에서 90배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자 차장 A에게 그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2. 10. 31.경(날짜 모름) 차장 A이 위 사항을 반영한 문서(제목: 정규직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및 필기시험 실시계획)를 기안한데 대하여 결재한 후 ☆국장의 결재를 받았다.<sup>20)</sup>

이에 따라 “1-나-(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필기시험 선발기준 부당 변경 등

### ① 필기시험 선발기준 부당 변경

필기시험 선발기준은 “1-나-(3)-①항”의 내용과 같이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사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2년 11월 경 차장 A이 ●●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제출 받은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점수와 순위 등이 기재된 자료를 보고하자 그 내용을 ☆국장에게 보고한 후 ☆국장과 논의하여 경영학과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서 전공과목 과락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1981년 이전 출생자를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사람은 “1-나-(3)-①항”의 내용과 같이 차장 A에게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위 사람은 차장 A으로부터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 현황”의 내용과 같이 필기시험 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 ② 허위 문서 작성 및 보고

---

20) 위 문서는 ○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었음

이와 같이 위 사람은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여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면서도 ☆국장과 논의하여 사장에게는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중순경(날짜 모름) 위 사람은 사장에게 필기시험합격자 선정현황을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차장 A에게 지시하였다.

그 후 2012년 11월 중순경(날짜 모름) 차장 A이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각 과목 4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문서(제목: 정규직사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실시 계획)를 작성한 데 대해 위 사람은 이를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사장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나-(2)항”의 내용과 같이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문서가 작성되어 사장에게 보고되었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어야 할 N과 Q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을 거쳐 5급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되었다.

### 3. C의 경우

#### 가. 2012년도 고졸 인턴사원 부당 채용

위 사람은 2012. 6. 21.경(날짜 모름) 사장 R이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D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고졸 인턴에 챙겨

보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팀장 B에게 D를 면접시험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그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차장 A이 D를 면접시험대상자에 포함시킨 문서(제목: 2012년 인턴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계획)를 기안한 데 대하여 위 사람은 이를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위 문서가 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가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2012년도 5급 정규직사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1)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 부당 확대

위 사람은 서류전형결과를 보고받은 후인 2012년 10월 말경(날짜 모름)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필기시험일이 겹쳐 필기시험응시율이 저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의 70배수에서 90배수로 변경하도록 ★팀장 B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2. 10. 31.경(날짜 모름) 차장 A이 위 사항을 반영한 문서(제목: 정규직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및 필기시험 실시계획)를 기안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나-(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필기시험 선발기준 부당 변경 등

#### ① 필기시험 선발기준 부당 변경

위 사람은 2012년 11월경(날짜 모름) ★팀장 B으로부터 ●●가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점수와 순위 등이 기재된 자료를 보고받은 후 ★팀장 B과 논의하여 경영학과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서 전공과목 과락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1981년 이전 출생자를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위 사람은 ★팀장 B으로부터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 현황”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필기시험 합격기준에 따라 선정된 필기시험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았다.

## ② 허위 문서 작성 및 보고

이와 같이 위 사람은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여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하고도 ★팀장 B과 논의하여 사장에게는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중순경(날짜 모름) 차장 A이 필기시험합격자 선정 관련 문서(제목: 정규직사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실시계획)를 작성하면서 당초 정규직사원 채용계획(각 과목 4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한 데 대해 위 사람은 이를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사장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나-(2)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1-가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D에게 면접기회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턴사원 채용계획과 2012년도 인턴사원 채용공고 등에 따르면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만 면접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지원서 접수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실상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는 D에게 면접기회를 주어 합격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1-나-(1)항”과 관련하여 필기시험날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겹치기 때문에 필기시험응시율이 낮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서류전형합격자 선발배수를 채용예정인원의 70배수에서 90배수로 늘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람들이 서류전형결과를 확인한 후 서류전형합격자 선발배수를 늘린 점, ② 2011년도와 2013년도 정규직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합격자 선발배수가 각각 20배수와 60배수로서 70배수에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1-나-(2)-①항”과 관련하여 위 공사가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필요하여 필기시험합격자 중 남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였고, 신규직원이 나이가 많은 경우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1981년 이전 출생자를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람들이 문답서에는 필기시험합격자 중 남자비율을 늘리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도 답변서에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변명 내용이 상

이한 점, ②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점, ③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사장에게는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고한 점, ④ 필기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1981년 이전 출생자를 나이가 많다는 사유로 필기시험합격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 ⑤ 2011년도와 2013년도 정규직사원 채용 시에는 나이가 합격자 선정기준이 아니었던 점, ⑥ 경영학이나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는 나이가 많은 경우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1981년 이전 출생자를 필기시험 합격자에서 제외한 반면, 법학을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는 고시를 준비하느라 나이가 많아진 경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유로 나이제한을 하지 않았고, 정보기술분야 지원자는 기술직무의 특성상 나이가 많아도 조직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유로 나이제한을 하지 아니한 점, ⑦ 경영학과 방송·언론·광고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서만 과락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높인 점, ⑧ 남자를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변경하였다는 ☆국장은 면접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남자를 많이 채용하려고 하지는 아니한 점<sup>21)</sup>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공사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공사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위 공사 「인사규

21) ☆국장 면접점수의 중간점수 16점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남자응시자 30명 중 13명(43%)에게 16점 이상을, 여자응시자 69명 중 39명(57%)에게 16점 이상을 부여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필기시험 순위 변경 현황

(단위: 점, 위)

번호	수험번호	분야	성명	성별	필기시험 순위		결과		탈락사유
					당초	조정	당초	조정	
1	-	경영학	H	남	67	38	불합격	합격	
2	-	경영학	S	여	63	40	불합격	합격	
3	-	경영학	T	남	84	42	불합격	합격	
4	-	경영학	U	남	100	42	불합격	합격	
5	-	경영학	V	여	95	40	불합격	합격	
6	-	경영학	Q	여	69	47	불합격	합격	
7	-	경영학	W	여	69	47	불합격	합격	
8	-	경영학	X	여	74	47	불합격	합격	
9	-	경영학	Y	남	76	47	불합격	합격	
10	-	경영학	Z	남	84	47	불합격	합격	
11	-	경영학	AA	남	89	47	불합격	합격	
12	-	경영학	AB	남	100	47	불합격	합격	
13	-	경영학	AC	여	100	47	불합격	합격	
14	-	경영학	G	남	10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15	-	경영학	AD	여	12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16	-	경영학	AE	여	20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17	-	경영학	AF	남	24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18	-	경영학	AG	여	28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19	-	경영학	AH	여	38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0	-	경영학	AI	남	40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1	-	경영학	AJ	여	40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2	-	경영학	AK	여	44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3	-	경영학	AL	여	47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4	-	경영학	AM	여	47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5	-	경영학	AN	여	47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6	-	경영학	AO	남	53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7	-	경영학	AP	여	55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8	-	경영학	AQ	여	55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29	-	경영학	AR	여	55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30	-	경영학	AS	여	46	-	합격	불합격	1981년 이전 출생
31	-	경영학	AT	남	55	34	합격	합격	
32	-	경영학	AU	남	55	34	합격	합격	
33	-	방송·언론·광고	M	남	37	19	불합격	합격	
34	-	방송·언론·광고	N	남	48	19	불합격	합격	
35	-	방송·언론·광고	O	남	48	19	불합격	합격	
36	-	방송·언론·광고	I	여	22	-	합격	불합격	전공 50점 미만
37	-	방송·언론·광고	AV	여	28	-	합격	불합격	1981년 이전 출생

주: 필기시험은 전공과목과 논술 등 2개 과목에 대해 실시, 당초 불합격되었다가 합격으로 처리된 자들은 전공과목 점수가 50점 이상이나 전공과목 점수와 논술점수를 합친 총점수가 낮아 불합격되었던 것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직 6급 직원 채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내 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2008. 6. 16.부터 파견근로자의 신분으로  
◎실 비서직으로 근무하던 AW(1982. 3. 17.생)을 2012. 2. 1. 일반직 6급으로  
채용하였다.

위 공사 「인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  
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 공사의 구 「파견근로자 운용에 관한 규정」(2012.  
8. 22. 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과 현재 운용 중인 「파견근로자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sup>1)</sup>에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sup>2)</sup>

이와 관련 위 공사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비서직  
등에 매년 적게는 27명에서 많게는 29명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위 사람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6급 일반직 3명을 채용<sup>3)</sup>하면

---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제정, 법률 제11373호)의 시행에 따라 「한국방송광고  
공사법」이 폐지되어 2012. 5. 23. 위 공사의 제 규정 등이 새로이 제정되었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2년을 초과  
하여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3) 위 공사에서는 2008. 1. 1. 기능직 전체 46명을 일반직 6급으로 일괄 전환한 후 일반직 6급은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3명만 채용

서도 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였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채용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 불공정 채용의 통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규 일반직 채용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의 비서직으로 2008. 6. 16.부터 근무하던 AW에 대하여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2010. 6. 15. 파견근무를 종료한 후 ㉠의 비서를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sup>4)</sup> 다음 날인 6. 1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2개월 15일간을 계약직으로 AW과 직접 계약하여 고용하다가 같은 해 9. 1. 이후부터 동일한 파견회사와 2년 계약으로 AW을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sup>5)</sup>하였다.

그리고 위 AW이 2012년 1월경(날짜 모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하였다는 사유로 위 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위 공사에서는 「인사규정」 제8조에 일반직 6급의 경우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한 경우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2. 1. 사장의 결재를 받아 AW을 일반직 6급으로 채용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의 직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

4) 임원 비서·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다른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은 모두 2년을 초과하지 않음

5) 2014. 7. 17. AW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의 질의·답변 결과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방법으로 동일업무를 2개월 15일간 계약방식만 바꾸어 계속 고용한 후 2010. 9. 1. 이후부터 또다시 전과 같은 파견회사와 2년 계약을 맺고 AW을 파견받아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봄

사용하여 정규 일반직 부당 채용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자산 운용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내 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표 1]과 같이 부산지사 등 4개 지사 사옥을 보유 및 운용하고 있다.

[표 1] 지사 사옥 보유 및 운용 현황(2013년)

(단위: 명, m<sup>2</sup>, %)

구분	층수	직원 수	연면적 (A)	사용면적 (B)	임대면적 (A-B)	사용률 (C=B/A)
부산지사	지하2F, 지상8F	10	4,594	736	3,858	16.0
대구지사	지하1F, 지상7F	10	3,172	662	2,510	20.9
광주지사	지하1F, 지상7F	8	3,752	1,261 <sup>주)</sup>	2,491	33.6
대전지사	지하1F, 지상7F	9	4,257	770	3,487	18.1
계		37	15,775	3,429	12,346	21.7

주: 세미나실(240m<sup>2</sup>) 및 강당(240m<sup>2</sup>) 포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7조에 따르면 각 기관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예산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며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29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

점적으로 영위하다가 2012. 5. 2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상파방송광고대행이 경쟁체제<sup>1)</sup>로 바뀌면서 [표 2]와 같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2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었으며, 2014년 역시 영업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2] 5개년 손익 현황(2010~2014년)<sup>주</sup>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추정)
광고판매액	21,866	23,372	14,854	14,003	13,200
매출액	3,124	3,338	2,163	2,038	1,950
영업이익	102	126	-193	-155	-140
당기손익	174	189	-41	-50	-40

주: 2013년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작성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공사에서 지사 사옥 등 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당해기관의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위 4개 지사 사옥은 임대수입에 비하여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표 3]과 같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사옥 운용 실적과 비교하였을 때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지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수익이 5년간 총 37억여 원 증가하는 등 필요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데도 [표 1]과 같이 각 지사에서 필요한 면적의 최대 6배(부산지사) 규모의 사옥을 보유하면서 나머지 공간은 임대로 운용<sup>2)</sup>하고 있다.

1) 위 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가 민영 방송사인 ▷▷와 지역민 방 등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위 공사는 ◀◀와 ▶▶ 등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

2) 4개 지사에 입주해 있는 45개 업체 중 언론 관련 기관은 단 9곳에 불과하여 총 임대면적 12,345㎡ 중 2,149㎡만을 언론 관련 단체가 사용(유관기관 사용률 17.4%)하고 나머지는 36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등 위 공사에서는 공공성과는 무관하게 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지사 사옥을 운용

[표 3] 사옥 매각의 경제적 효과

(단위: 백만 원)

지사	연간 손익변동 추정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부산	수지개선 요인 <sup>1)</sup>	504	484	488	552	502	2,530
	수지악화 요인 <sup>2)</sup>	267	251	231	306	346	1,401
	손익변동	237	233	257	246	156	1,129
대구	수지개선 요인	391	363	402	429	383	1,968
	수지악화 요인	220	225	223	262	236	1,166
	손익변동	171	138	179	167	147	802
광주	수지개선 요인	350	360	399	412	399	1,920
	수지악화 요인	195	180	172	202	183	932
	손익변동	155	180	227	210	216	988
대전	수지개선 요인	370	354	359	390	368	1,841
	수지악화 요인	195	197	198	207	200	997
	손익변동	175	157	161	183	168	844
손익변동 합계		738	708	824	806	687	3,763

주 : 1) 관리비[수도광열비·세금과 공과금·수선유지비·보험료·지급수수료(용역비)]와 감가상각비 감소 및 매각대금 이자수익 증가[처분가액 × 당해연도별 이자수익률('09년 4.6%, '10년 3.9%, '11년 4.1%, '12년 4.0%, '13년 3.0%, 경영평가보고서 기준)]

2) 임대수입 감소와 임차비용 증가(현 지사 사용 사무실 면적 유지 전제, 관리비 포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이와 같이 위 공사의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표 4]와 같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지사 사옥 운용수익이 -586백만 원 발생하는 등 손실만 초래하였다.

[표 4] 4개 지사 사옥 운영수익 현황(2009~2013년)

(단위: 명, m<sup>2</sup>, %, 백만 원)

지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부산	임대수입	221	205	185	260	300	1,171
	관리비용	253	254	253	297	291	1,348
	운용수익	-32	-49	-68	-37	9	-177
대구	임대수입	196	201	199	238	212	1,046
	관리비용	142	141	172	207	191	853
	운용수익	54	60	27	31	21	193
광주	임대수입	143	128	120	150	131	672
	관리비용	179	201	234	255	251	1,120
	운용수익	-36	-73	-114	-105	-120	-448
대전	임대수입	167	169	170	179	172	857
	관리비용	195	188	188	226	214	1,011
	운용수익	-28	-19	-18	-47	-42	-154
(4개 지사) 연도별 손익합계		-42	-81	-173	-158	-132	-586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  
유실익이 적은 지사 사옥을 매각하는 등 합리적인 자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퇴직자 모임에 대한 예산지원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내 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모임인 ♠♠회<sup>1)</sup>에 2007년 부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sup>2)</sup>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위 공사 사업추진과 직원 복리증진과 무관한데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표]와 같이 총 115,000천 원의 예산을 ♠♠회에 지원하였고, ♠♠회는 지원받은 예산을 회원들의 관광비용과 경조금으로 사용하였다.

1) 1994년 설립된 위 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모임으로 기금조성, 회원 경조사 부조 등의 사업을 하는 사적단체임

2) 더구나 방송광고에 대한 독점조항이었던 「방송법」(2007. 7. 27. 법률 제8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헌재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되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5항과 부칙 제7조에 따라 허가제로 바뀌게 되어 위 공사는 기존에 독점 하던 광고판매 대행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영업손익은 2011년 183억 원에서 2013년 -155억 원으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

[표] 연도별 ♣♣회 예산지원 현황

(금액단위: 천 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금액	10,000	15,000	15,000	10,000	10,000	15,000	20,000	20,000	115,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퇴직자 모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대학생 자녀 등 학자금 지원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내 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규정」 제5조와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복지항목 시행기준」 제6조에 따라 직원 대학생 자녀<sup>1)</sup>에게 학자금 대출금과 장학금을 각각 예산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KOBACO장학사업을 통해 외부 대학생<sup>2)</sup>에게는 예산<sup>3)</sup>으로 학자금(이하 “KOBACO장학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있다.

위 공사 「자녀학비보조금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대여학자금 대부 기준」 제4조 및 「대학생 자녀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 1. 대부한도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한도는 등록금 범위 내 금액으로 하되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장학금 또는 대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대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학재단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등에 따라 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학자금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수혜자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2011. 11. 14.부터 2014. 4. 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학자금 지원자료 제공요청 등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협조 공문을 위 공사에 시행하였다.

1) □팀에서 지급

2) 광고산업진흥팀에서 방송·광고 관련 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학기만 지급하는 장학금

3) 영업외 비용(기부금)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직원 대학생 자녀와 외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자료를 활용하는 등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았는지 확인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고, 또한 장학재단의 요청 공문대로 직원 대학생 자녀와 KOBACO장학금 수급자의 학자금 관련 자료를 장학재단에 제공하여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11년 2학기부터 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외부 대학생에게 KOBACO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2013. 3. 18. 장학재단과 학자금 지원정보를 공유하여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KOBACO장학금 자료만 장학재단에 제공하였을 뿐 직원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및 대출금 자료는 2014. 6. 27. 현재까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2014. 5. 12. ~ 6. 27.) 중 장학재단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의 경우 ☆국장<sup>4)</sup> 1급 AX<sup>5)</sup>은 2명의 대학생 자녀(♠♠대 AY, ♣♣대 AZ)의 등록금 납부금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sup>6)</sup>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차례 총 41,430천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고도 위 공사로부터 총 17,920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2011년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별표 1] “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이중지원 현황”과 같이 직원 11명이 15회에 걸쳐 등록금을 초과하여 18,099천 원, KOBACO장

4) 사내근로복지기금 총괄책임자

5) 2007. 7. 11. ~ 2011. 9. 15. ☆국장(1급)이었으며 그 이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전문위원(계약직)으로 재직 중

6) AX의 처 BA(●●초등학교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명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에 대하여 12차례 총 41,430천 원을 대출받았음

학금의 경우[별표 2] “KOBACO장학금 이중지원 현황(2011~2012년)”과 같이 31명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총 35,004천 원을 지원받는 등 장학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42명이 46회에 걸쳐 등록금을 초과하여 총 53,103천 원의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통보]** 한국장학재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학자금 이중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급된 학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 ① 앞으로 직원 대학생 자녀 및 외부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의 학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협약을 이행하는 등 학자금을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직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이중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지원 학기	직급	직원명	자녀명	대학교	등록금 총액 (A)	공사장학금 지원 금액 (B)	장학재단 확인장학금 (C)	장학재단 확인대출금 (D)	등록금초과 지원금액 (E=B+C+D-A)
1	2011년 2학기	-	BB	BC	▣▣대	4,880	1,493	-	4,880	1,493
2	2012년 1학기	-	BD	BE	●●대	4,332	1,493	-	4,300	1,461
3	"	-	BD	BF	●●대	4,290	1,493	-	4,290	1,493
4	"	-	AX	AZ	♣♣대	3,487	1,493	-	3,470	1,476
5	2012년 2학기	-	BG	BH	▣▣대	3,411	1,493	-	3,400	1,482
6	"	-	AX	AZ	♣♣대	3,487	1,493	-	3,470	1,476
7	"	-	BI	BJ	▣▣대	3,317	1,000	2,322	-	5
8	2013년 1학기	-	BK	BL	●●대	3,671	1,493	-	3,671	1,493
9	"	-	AX	AZ	♣♣대	3,487	1,493	-	3,470	1,476
10	"	-	BM	BM	▣▣대	3,819	1,493	2,580	-	254
11	2013년 2학기	-	BN	BO	▣▣대	4,734	1,493	4,734	-	1,493
12	"	-	BK	BL	●●대	3,671	1,493	-	3,662	1,484
13	"	-	BP	BQ	▣▣대	3,061	1,493	2,121	-	553
14	"	-	AX	AZ	♣♣대	3,487	1,493	-	3,470	1,476
15	"	-	BR	BS	▣▣대	1,671	1,280	1,375	-	984
합계						54,805	21,689	13,132	38,083	18,099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KOBACO장학금 이종지원 현황(2011~2012년)

(단위: 천 원)

연 번	지원학기	대학교	학생명	등록금 총액 (A)	KOBACO 장학금 (B)	재단확인 장학금 (C)	재단확인 대출금 (D)	등록금 초과지원금액 (E=B+C+D-A)
1	2011년 2학기	ㅁㅁ대	BT	2,992	1,828	1,100	1,878	1,814
2	"	ㅂㅂ대	BU	3,461	2,000	-	3,461	2,000
3	"	ㄷㄷ대	BV	3,364	864	2,500	864	864
4	"	ㄹㄹ대	BW	3,374	2,000	-	3,374	2,000
5	"	ㅅㅅ대	BX	3,483	2,000	1,100	2,383	2,000
6	"	ㅇㅇ대	BY	4,770	2,000	-	3,187	417
7	"	ㅈㅈ대	BZ	4,468	2,000	-	2,483	15
8	"	ㅊㅊ대	CA	3,666	2,000	-	2,490	824
9	"	ㅋㅋ대	CB	3,139	2,000	-	3,139	2,000
10	"	ㆁㆁ대	CC	4,340	2,000	-	3,707	1,367
11	"	ㆂㆂ대	CD	3,427	2,000	389	2,000	962
12	"	ㆃㆃ대	CE	3,729	2,000	-	3,718	1,989
13	"	ㆄㆄ대	CF	4,001	2,000	-	4,001	2,000
14	"	ㆅㆅ대	CG	4,716	2,000	-	2,736	20
15	"	ㆆㆆ대	CH	2,942	2,000	-	2,927	1,985
16	"	ㆇㆇ대	CI	3,445	2,000	-	2,559	1,114
17	"	ㆈㆈ대	CJ	3,741	2,000	-	3,241	1,500
18	"	ㆉㆉ대	CK	3,989	2,000	-	2,790	801
19	"	ㆊㆊ대	CL	3,859	2,000	-	3,829	1,970
20	"	ㆋㆋ대	CM	3,593	2,000	-	1,957	364
21	"	ㆌㆌ대	CN	1,380	1,360	-	1,380	1,360
22	2012년 2학기	ㆍㆍ대	CO	2,119	1,000	-	2,119	1,000
23	"	ㆎㆎ대	CP	4,462	1,000	2,646	1,371	555
24	"	㆏㆏대	CQ	3,036	1,000	2,122	-	86
25	"	㆑㆑대	CR	2,827	1,000	1,827	1,000	1,000
26	"	㆒㆒대	CS	2,827	431	2,396	431	431
27	"	㆓㆓대	CT	3,531	1,000	3,531	-	1,000
28	"	㆔㆔대	CU	3,111	1,000	-	3,120	1,009
29	"	㆕㆕대	CV	3,913	1,000	1,780	2,133	1,000
30	"	㆖㆖대	CW	3,373	1,000	2,298	1,126	1,051
31	"	㆗㆗대	CX	3,542	1,000	2,000	1,048	506
합계				108,620	49,483	23,689	70,452	35,004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회의비 집행, 성과급 지급 및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관광공사

관 계 기 관 한국관광공사 본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해 대내외회의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휴가를 지정하는 등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1. 대내외회의비 지급 부적정

위 공사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직책별로 [표]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정하여 그 결제대금을 대내외회의비로 지급하고 있다.

[표] 대내외회의비 지급기준(2014년)

(단위: 천 원)

구분	직급	월 지급액
본부장	-	900
실장	지사장, 단장·센터장(1급)	360
팀장	팀장, 파트리더(2, 3급)	220
교수·분석관	1급	360
	2,3급	220

자료: 한국관광공사

위 공사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대내외회의비는 광고선전비 예산으로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민 관광 진흥을 위한 광고, 공고 및 기타 대외 진흥·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육파견자 등 총 48명에게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계 98,569천 원의 대내외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예산 목적과 다르게 대내외회의비를 집행하고 있다.

## 2.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부적정

위 공사에서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 교육 파견자 등의 경우 일괄적으로 중간등급인 ‘B등급’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II의 ②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파견기간, 파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교육 파견된 직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B등급’을 부여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2명의 직원에게 계 721,766천 원(1인당 평균 17,185천 원<sup>1)</sup>)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실제 근무하고서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성과급 10,320천 원<sup>2)</sup>보다 교육파견자 등에게 1인당 평균

1) 교육파견자 등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성과급 17,185천 원=성과급 총액 721,766천 원÷총 42명

6,865천 원 많은 17,185천 원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을 불합리하게 지급하였다.

### 3.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기획재정부에서 2008년 이후 매년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한 예산집행 지침 II의 ②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와 경조사 휴가 등을 제외한 유급휴가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08. 11. 27.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통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의]** 앞으로 교육과건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성과평가 시 일괄적으로 중간등급을 부여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교육과건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한국관광공사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대내외회의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2)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0,320천 원=성과급 총액 7,058,980천 원÷총 684명

#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외출장 준비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관광공사

관 계 기 관    한국관광공사 본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자료 수집, 홍보회 실시, 국제회의 참가 등을 위해 [표 1]과 같이 매년 400회 이상의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국외출장 실시 현황**

(단위: 회, 천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횟수	400	402	462	422
출장비(항공료 포함)	880,892	940,571	1,159,508	969,265

주: 2014. 4. 25. 기준 환율 적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위 공사에서는 「여비규정」 제2조에 따라 교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제여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2008년 4월 시행한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외여행 경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국외 출장자에게 출장 준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을 시달받고도 「여비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규정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국외출장을 가는 임직원에게 300달러에서 최고 600달러까지의 국외출장준비금<sup>1)</sup>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지급되지 말아야 할 국외출장 준비금 총161백만여 원이 지급되었다.

[표 2] 연도별 국외출장 준비금 지급 내역

(단위: 명, 천 원)

구분	2008년 5월 이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월까지	계
지급인원	39	46	74	86	83	57	12	266
지급액	15,562	22,358	31,307	33,722	32,939	21,625	4,130	161,643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국외출장 준비금 명목으로 여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외출장준비금을 지급받은 차는 제외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관광공사

관 계 기 관 한국관광공사 본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내외 관광 정보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또는 홍보하기 위해 2014년 7월 현재 20개 홈페이지를 구축(구축비 계 3,104백만원)·운영(연간 유지보수비 총 2,043백만원)하고 있다.

위 공사 「정보화 업무규정」(2013. 11. 22. 규정 제1194호)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화<sup>1)</sup>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화사업 업무추진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 1. 정보 및 내용이 유사한 홈페이지 중복 개설

위 공사에서는 관광지 교통, 숙박, 먹거리 등 일반적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어, 월평균 방문객: 85만여 명), ‘Visit Korea’(영어 등, 월평균 방문객: 600만여 명)라는 대표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위 대표 홈페이지와 다른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에는 대표 홈페이지와의 콘텐츠(Contents) 중복 여부,

---

1) 「정보화 업무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화란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수집, 축적, 전달을 처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는 처리시스템을 통칭)을 활용하여 업무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대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필요기능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차별화된 정보 제공, 대표 홈페이지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기능(예: 예약 기능, 관광지 평가 기능 등)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와 대표 홈페이지 간의 콘텐츠(Contents) 중복 및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4. 5. 12. ~ 6. 27.) 중 대표 홈페이지와 나머지 홈페이지 간의 콘텐츠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2013년 1월 구 ■팀(현 ⊙팀)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함께하는 여행’ 홈페이지의 경우 콘텐츠 부족, 인지도 미미에 따른 이용자 수 저조(월평균 이용자: 2013년 5,187명 → 2014년 3,633명), 홈페이지 별도 운영에 따른 인력·기능 중복 등의 문제로 구축 1년 만인 2014년 1월 해당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홈페이지 구축비(141백만 원) 및 운영비(21백만 원)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또한 2011년 2월 구 ✚팀(현 ✚팀)에서 녹색관광(도보, 자전거 여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녹색관광’ 홈페이지의 경우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와 차별성이 없는데도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구축비 268백만 원)하여 구축 이후 이용자(월평균 이용자: 2012년 8,217명 → 2013년 3,679명 → 2014년 2,775명)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대표 홈페이지와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2. 홈페이지 운영 현황 점검 미흡

홈페이지의 경우 일단 구축한 후에는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홈페이지 운영방식의 점검·평가를 통해 이용 현황이 저조한 경우 개선·보완 또는 폐지 등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별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같이 위 공사 ◆팀에서 한-아세안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 및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아세안 관광커뮤니티’ 등 2개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sup>2)</sup> 사업 특성상 일시적인 시기에만 홈페이지 수요가 발생<sup>3)</sup>하여 연간 월평균 이용객<sup>4)</sup>이 대표 홈페이지를 제외한 18개 홈페이지<sup>5)</sup>의 평균 이용객인 19,294명(2014년 기준)의 10%(한-아세안 관광커뮤니티: 408명, Korea in Motion: 6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용이 저조한데도 위 공사에서는 구축된 홈페이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운영 현황만 파악할 뿐 해당 홈페이지의 이용 현황 및 유지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Medical Korea’ 등 4개 홈페이지<sup>6)</sup>의 경우는 개발 당시부터 이용객 수 집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도 이용객 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 현황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조차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팀에서 2010년 1월 위 공사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외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관광후기, 동영상, 사진 등을 취합·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

---

2) ‘한-아세안 관광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이용할 한-아세안 교육프로그램 참가자가 연 20명 내외임

3) ▶팀에서 운영하는 ‘Korea in Motion’의 경우 공연관광 축제기간에만 홈페이지 임시 활용

4) 연간 누적 이용객 수를 개월 수로 나눈 값

5) 대표 홈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Visit Korea’의 경우 다른 홈페이지와 이용객 수 격차가 너무 커 평균 이용객 수 산정 시 제외

6) Medical Korea, 굿스테이, 코리아스테이, 한국관광공사 시티투어

의 실시간 의견 공유를 위해 ‘Buzz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대표 홈페이지에서 풍부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정보검색 능력이 향상되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의 발달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 간의 실시간 의견 공유가 가능해지는 환경아래 해당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대한 분석 없이 연간 426백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 ▲팀(현 ▼팀)에서 운영 중인 ‘Korea Taste’ 홈페이지 역시 음식정보 제공 외에 실시간 의견 공유 기능을 추가하고자 2010년 7월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음식정보는 대표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중)하였으나 ‘Buzz Korea’ 홈페이지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으로 실시간 의견 공유가 가능한 환경아래 이용실적에 대한 분석 없이 이를 지속 운영(연간 유지보수비 20백만 원)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20개 홈페이지 중 총 6개 홈페이지가 유사 홈페이지 구축, 이용현황이 저조하거나 기존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최대 926백만 원<sup>7)</sup>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 ①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는 경우 기존 홈페이지와의 콘텐츠 중복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구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7) ‘함께하는 여행’의 구축비 141백만 원 및 운영비 21백만 원, ‘녹색관광’의 구축비 268백만 원, ‘한-아세안 관광커뮤니티’의 구축비 19백만 원 및 운영비 5백만 원, ‘Korea in Motion’의 구축비 16백만 원 및 운영비 10백만 원, ‘Buzz Korea’의 연간 운영비 426백만 원, ‘Korea Taste’의 연간 운영비 20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

② 정기적인 홈페이지 운영방식의 점검·평가를 통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선·보완 또는 폐지 등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 현황

(단위: 천 원, 명)

연번	사업부서	홈페이지 명	운영현황			방문자 수(연간 월평균 <sup>1)</sup> )			
			개시일	구축비	유지보수비 <sup>2)</sup> (연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팀	대한민국 구석구석	2010. 11.	155,760	549,384	-	855,187	809,454	800,501
2	⊗팀	Visit Korea	2008. 4.	958,000	399,442	6,435,372	7,402,737	6,307,136	6,023,356
3	◆팀	한-아세안 관광커뮤니티	2013. 1.	19,800	5,445	-	-	142	408
4	▶팀	Korea in Motion	2012. 8.	16,000	10,000	-	2,790	2,774	613
5	●팀	한국관광투자 <sup>3)</sup>	2013. 12.	20,900	-	-	-	-	1,299
6	◆팀	Buzz Korea	2010. 11.	35,000	426,295	38,227	176,674	208,141	23,250
7	●팀	K-MICE	2010. 6.	796,000	245,000	26,067	24,415	34,546	27,589
8	▶팀	R-16	2007. 2.	13,000	7,000	8,649	13,503	16,282	20,259
9	⊙팀	한국관광의별	2010. 3.	5,000	-	-	32,086	20,998	44,849
10		한국관광100선	2012. 11.	78,400	18,000	-	221,709	31,759	17,173
11	⊙팀	함께하는여행	2013. 1.	141,000	21,880	-	-	5,187	3,633
12	+팀	걷기여행길	2013. 10.	190,000	165,000	-	-	7,104	35,706
13		녹색관광	2011. 2.	268,920	-	1,067	8,217	3,679	2,775
14	▼팀	Korea Taste	2010. 7.	150,000	20,000	14,309	13,696	11,417	15,088
15	▽팀	한옥에서의 하루	2008. 12.	19,430	120,000 (통합관리)	1,209	19,371	23,149	32,073
16		굿스테이	2007. 9.	23,000		-	-	-	-
17		코리아스테이	2011. 11.	100,000		-	-	-	-
18	☆센터	Medical Korea	2009. 8.	29,000	10,590	-	-	-	-
19	⊗팀	한국관광공사 시티투어	2014. 1.	42,000	21,700	-	-	-	-
20	⊙팀	베니키아	2011. 8.	43,041	24,000	84,310	46,040	52,270	45,405
계	15개 사업팀			3,104,251	2,043,736	6,609,210	8,816,425	7,534,038	7,093,977
18개 홈페이지 평균 이용자 수 <sup>4)</sup>						41,696	56,240	32,111	19,294

- 주: 1. 연간 누적 이용객 수를 운영개월 수로 나눈 값  
 2. 유지보수비는 2014년 예산 기준  
 3. ●팀의 '한국관광투자' 역시 이용객 수가 1,299명으로 저조한 편이나 2014년에 구축된 홈페이지임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  
 4. 대표 홈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Visit Korea'의 이용자의 경우 다른 홈페이지와 10배 이상 차이나 이를 포함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평균값이 높아져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이용객 수를 제외한 후 평균 이용자 수를 계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상임고문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관광공사

관 계 기 관 한국관광공사 본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0년 1월과 같은 해 5월 전 ◉장 CY과 전 ●장 CZ<sup>1)</sup>을 각각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2009. 1. 29. 기획재정부) 제 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문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09. 7. 30. 사장 DA이 부임한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 및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근무하던 모든 상임이사(사장 포함 총 4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자 2010. 1. 17.과 같은 해 5. 9. 상임이사직인 ◉장과 ●장으로 근무하던 CY, CZ을 자진 사퇴하도록 하였다.

1)

### 2009년 상임이사 운용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임기	퇴직월
1	사장	DA	2009. 7. ~ 2013. 7.	2013. 12.
2	◉장	CY	2008. 12. ~ 2010. 12.	2010. 1.
3	◇장	CZ	2009. 3. ~ 2011. 3.	2010. 5.
4	▣장	DB	2008. 12. ~ 2011. 7.	2011. 7.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사람들이 사퇴한 다음 날인 2010. 1. 18.과 같은 해 5. 10. 위 사람들을 상임이사 잔여 임기기간<sup>2)</sup> 동안 각각 ● 고문과 ○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뚜렷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sup>3)</sup>, 같은 해 5월에는 공석이 된 위 상임이사 직에 각각 DC(전 ●●대 교수), DD(전 한국관광공사 ◇장)을 선임하였다.

그 결과 임기 전 자진사퇴한 상임이사의 잔여임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 부여 없이 고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고문위촉료<sup>4)</sup> 계 209백만 원 (CY: 106백만 원, CZ: 103백만 원)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임기 전 퇴직한 상임이사의 잔여 임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문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2) CY: 2010. 1. 18. ~ 2010. 12. 5., CZ: 2010. 5. 10. ~ 2011. 3. 17.

3) 위 사람들의 실적을 증명할 만한 자료 없음

4) 퇴직 당시 월 보수액과 전년도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가평와인밸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관광공사  
관 계 기 관 한국관광공사 본사  
내 용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1. 2. 17.부터 가평군과 공동<sup>1)</sup>으로 가평군 일원에 와인홍보관, 양조장, 포도밭 등을 조성하는 가평와인밸리사업(총 사업비 80억 원, 한국관광공사 투자비 20억 원, 부지면적 29,000m<sup>2</sup>)을 추진하고 있다.

위 공사 「투자사업타당성 심사관리규정」 제3조, 제6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위 공사의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은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실무단<sup>2)</sup>(이하 “평가실무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경영위원회<sup>3)</sup>(사장과 본부장으로 구성)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업 착수 결정 이후에도 투자비의 조기 회수와 사업착수 결정 당시의 사업수지가 유지·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sup>4)</sup>

1) 2011. 2. 17. 가평군과 강변와인밸리사업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2) 위 공사 「투자사업타당성 심사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 기획조정팀장 및 예산팀 소속 회계사 등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

3) 위 공사 「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

4) 더구나 위 공사는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주요 수익사업이던 면세점 사업의 단계적 중단 및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기존 관광단지의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자체수익 급감으로 [표]와 같이 경영수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

한편 위 공사에서는 2011. 3. 29. 주식회사 ■■■(대표이사 DE)와 “가평와인밸리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금액 160백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 용역결과를 납품받은 후, 2013. 6. 24. 평가실무단에 위 용역결과를 상정하자 평가실무단에서는 위 사업타당성 조사가 수요예측과 손익분석이 낙관적으로 추정되었고 검증절차 및 근거자료도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사업시설과 유사한 업체들의 방문객 수, 매출액, 손익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sup>5)</sup>한 바 있다.

따라서 경영위원회에서 평가실무단의 검토안에 따라 가평와인밸리사업의 투자사업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자료를 근거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3. 8. 19. 평가실무단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경영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도 경영위원회에서는 위 공사에서 먼저 가평군에 사업을 제안하여 위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향후에 위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투자를 중단할 경우 가평군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가평군 지역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4년 7월 현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4. 5. 12. ~ 6. 27.) 중 가평와인밸리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별표]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지적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업이익	-313	-530	21	-369	-378	-436

자료: 한국관광공사

5) 2013. 5. 20.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실시한 위 공사 자체감사결과 가평와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위 공사 평가실무단의 투자타당성 심사와 경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함

항 명세”와 같이 예비비를 비용에서 제외하거나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를 유사시설보다 높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과소 산정하거나 매출액은 높게 잡는 등 사업타당성 분석을 부적정하게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재조정할 경우 [표]와 같이 순현재가치가 3,613백만 원에서 -2,198백만 원으로, 내부수익률이 9.3%에서 2.7%로 떨어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표]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사업타당성 비교

(단위: 백만 원, %)

구분	당초	재산정
사업비	6,316	6,947
정상화시점 총 매출액	5,205	2,893
정상화시점 영업이익	910	296
순현재가치(NPV)	3,613	-2,198
내부수익률(IRR)	9.3	2.7
B/C	1.7	0.7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 결과 위 공사에서 당초 사업계획안대로 가평와인밸리사업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가평와인밸리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가평군과 재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 위 용역보고서상 기준 할인율을 KDI에서 제시한 5.5%로 적용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시 산출된 내부수익률이 위 5.5%보다 높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별표]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 명세

구 분	내 용
사업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공사비+부대경비+보상비)의 10%를 예비비로 잡고 사업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단계 사업비를 제외한 6,316백만 원에 예비비 10%를 더한 6,947백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했음</li> <li>- 그런데 총사업비에 예비비를 더하지 않고 사업비를 축소 확정</li> </ul>
수요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수요예측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2006. 12. 구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수요예측은 한 가지 방법으로 예측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최소 2개 이상)으로 예측한 평균값을 사용하여 수요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평와인밸리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에서도 다양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적정수요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li> <li>- 그리고 적정수요를 산출할 때는 유사시설의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예상수요를 산정해야 함</li> <li>- 그런데 분담률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 만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평와인밸리의 분담률을 산정하면서 와인을 주제로 하는 유사시설인 청도와인터널과 무주머루와인동굴의 분담률에 유사시설이 아닌 가평뿌띠프랑스, 파주영어마을과 부천로보파크의 분담률을 합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산출</li> <li>- 그 결과 당초에 예측한 운영초기의 예상관람객 수요가 유사시설인 청도와인터널과 무주머루와인동굴의 분담률만 적용하여 재산정한 수요보다 운영시점(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예상수요를 과다하게 산정</li> </ul>
매출액·매출원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등에 따르면 객단가 추정 시 일반적으로 유사시설의 객단가를 기준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의 규모나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함</li> <li>- 따라서 가평와인밸리의 유사시설이고 연간 관광객의 수가 유사한 무주머루와인동굴의 경우 입장료가 2,000원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25%가량 할인된 1,500원을 객단가로 받고 있으므로 가평와인밸리의 경우도 입장료(5,000원/인)에 할인율을 적용한 객단가(3,750원/인)를 바탕으로 실제 입장료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li> <li>- 그런데 유사시설의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지 아니한 채 입장료(5,000원/인)의 경우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상 양조와 염색은 포도철인 매년 2개월(8~9월) 동안 건물 밖 데크에서 수행한다고 하고서는 타당성분석 시에는 1년 내내 수행한다고 분석하는 등 사업 환경과 동떨어진 가정으로 체험학습 매출액을 과다 산정하였고</li> <li>- 또한 수탁판매 와인의 경우 수탁판매수수료만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도 수탁 판매 와인도 자체 제조와인의 매출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16%p에서 최대 26%p 매출원가를 과소 산정</li> </ul>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